

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70,949,912	17,128,497
일반회계	557,292,354	16,718,771
특별회계	13,657,558	409,727
기타특별회계	13,657,558	409,72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482,375	44,471
주차장 특별회계	10,607,903	318,237
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	390,575	11,71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07,400	12,222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769,305	23,079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“ 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940,968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